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용권 위임 근거 마련〉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60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박은정 · 차규근 · 김준형 · 김재원 · 조 국
강경숙 · 김선민 · 황운하 · 이해민 · 서왕진 · 정춘생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30.

3. 회 부 일 : 2024. 10. 2.

※ 의안번호 : 446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무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사무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u>
<u>④ (생략)</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¹⁾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부 소속 기관의 대통령 임용²⁾
권의 위임 현황을 살펴보면, ①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18조³⁾
에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
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②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부 소속 기관의 경우 「국가공무
원법」 제32조제3항⁴⁾에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2)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함(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인사실무」, 2024, p.20).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감사원법」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파견·휴직·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는 바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5)에서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의 소속 장관 위임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의 소속 장관 위임을 규정하고 있음.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표-2]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 임용권 위임 현황

구 분	임용권 위임	
고위(감사) 공무원	대통령	○ 신규채용, 승진임용,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등
	감사원장, 소속 장관	○ 그 밖의 임용권
3급~5급 공무원	감사원장, 소속 장관	

이와 같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입법·행정·사법 어느 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위원회⁷⁾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부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인사행정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사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사무처)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 실익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가 ‘소속 장관’에게 위임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8)에 따라 ‘소속 장관’에는 위원장이 포함되므로 현재도 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임명’⁹⁾ 관련 규정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의 ‘임용’권 위임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행하고 ‘임명’을 제외한 ‘임용’권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8)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9) 임용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행위(補職行爲)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임용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派遣)·강임(降任)·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최종 검색일: 2024. 10. 16.), <<https://www.law.go.kr>>).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실무적으로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은 대통령이 행하고, ‘임명’을 제외한 ‘임용’은 위원장이 행하고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게 되면, 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실체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감사원의 경우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소속 장관’에 감사원장이 포함되므로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 일부가 감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사원법」 제18조제3항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⁰⁾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현행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명’이라는 용어는 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과 관련한 「감사원법」, 「국가공무

10) 「감사원법」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파견·휴직·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등에서 ‘임명’이라는 용어 대신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의 체계 정합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임명’도 ‘임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¹¹⁾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업무의 특수성·중요도를 감안하여 5급 이상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6조(사무처) ① (생략)	제16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임명</u>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임용</u> 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임명</u> 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u>임명</u>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임용</u> 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u>임용</u> 한다.
<신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017